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

2024. 9

전력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순 서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
2.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2
3. 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	3
4. 제출서류	4
5.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7. 서류제출 유의사항	11
8. 기타 유의사항	12
참고1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13
참고2 대표 부적합 사업유형	14
참고3 2025년 사업계획 수립 일정	17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2.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9.6.16일 제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3.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 원전의 경우,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시·군·구)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20년 시행)

4.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기준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등	시행자	지원기간
기본지원	■ (지원범위) 건설 및 운영 중인 발전소주변지역 ■ (산정기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단가(원/kWh) + 설비용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h)	지자체 발전사	건설 및 운영기간 중 (매년)
특별지원	■ (지원범위)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관할 자치단체(시·군·구) ■ (산정기준) 건설비(부지구입비 등 제외)의 1.5% 범위 내 * 원전 자율유치, 원전 9기 이상 건설 또는 유연탄 100만kW 이상 자율유치 시 0.5% 가산금 지원	지자체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운전 개시일 (건설기간 중 1회)
기타지원	■ 원자력/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등 지원) ■ 연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 범위 내	지자체	매년

2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복지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 시설물을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육영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 2억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 - 육영사업비가 1억 이상인 지역은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가능
주민복지지원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주민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실납부금액 범위 내 지원)	<용자사업> -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용자금 대여약정 체결 및 운영 - 조례로 기준 제정 <주민복지> - 지원한도: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 - 단, 주민건강진단비는 지원한도 예외
기업유치지원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용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 조례로 기준 제정
전기요금보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 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원전 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인 발전소 - *지원한도 : 기본지원사업비의 40%이내 -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 원전, 유연탄, 무연탄 화력발전소: 5% 이상 의무 사용 - 지원기준 : 시행요령 <별표1> 참고
그밖의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기준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함이 원칙이나, 시행요령 제18조2에 따라 아래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임 가능

-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건축의 경우 부기등기 이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의 수의계약기준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계약) 참조]

2. 시설물 취득·관리

토지, 건물, 선박 등 취득·매각시에, 시행자가 직접 ‘감정평가 시행’ 또는 ‘거래실례가격조사 시행’으로 공정한 가격 거래 준수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시행하고 시행자의 장에게 보고)

3. 기타 사항

① 장기사업 관련

- 장기사업 계획 기간 : 3년
- 보조금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법령상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는 단위사업인 경우에도 장기계획 수립 가능

* 장기계획 수립시점에 재해복구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의 경우에 한함

② 난방비 지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주변 시행요령(산업부 고시) 개정 이후, 지원사업 가능

4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구분	No	신청서류 내역	제출형식
필수	1	[서식4] 사업계획서 * 직인 날인 필요	발전소별로 HWP파일 제출 ※ 모아찍기(2쪽씩) 하지 말고 쪽 번호 없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단, 단위사업계획이 여러개 일 경우, 공통증빙(예, 주민 의견수렴, 지역위 관련 증빙 등)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
	2	[서식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3	[서식4-2] 단위사업계획서	
	4	[서식6]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5	증빙서류	
선택 (해당시)	6	[서식4-3] 시설 운영계획서 * 직인 날인 필요	
	7	[서식5]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8	원전지자체 주변지역 지원비율 서식	별도 엑셀로 제출

2. 증빙서류

No	구분	신청서류 내역
1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나라장터 가격정보, 나라장터 가격정보 없을 시 기타 견적서
2	토지매입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실례가격조사서 등 실거래가 확인 가능 서류 ※ 감정평가 시행 예정인 경우, 구체적인 계획 명시 필요
3	공사비	공사비 산출내역서
4	지역위원회 의무시행자	지역위원회 회의록
5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시행한 사항 - 공문, 회의록, 사진, 서명부, 홈페이지 게시내용 캡처화면 등

1.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의 준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면·동에 비치해야 함
- **지역위원회 의무시행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역위원회 심의**를 시행
- 시행요령 제21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재단 등에 대한 소유와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 법 제3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공개 등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 절차와 **사업계획의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절차 마련
 -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의견접수
 - * 산업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지역위원회 회의록은 지원사업 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 최소화 (**사업간변경 상반기 시행(2회)**, 하반기 신청불가)
 - 사업종류 내 단위사업계획 변경(**사업내변경**) :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 사업종류 간 계획변경(**사업간변경**) :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산업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1. 서식 4-1 <지원사업계획서> 사전절차이행여부 점검표 작성

- 작성목적 :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수렴 여부, 지원사업계획의 선정과정, 선정결과 공개방안 이행여부 확인
- 작성요령 : ① 주민의견수렴과정, ② 지역위원회 심의운영(해당시), ③ 확정사업계획 공개(산업부 심의확정[12월말 예정]이후 일자 기재) 필수 작성
- 작성예시

구 분	일 자	세 부 내 용	비 고
①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포함)	'24. 9. 10	○ 시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 00명 의견 제출 및 계획 반영	
	'24. 9. 20	○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사업 item 수렴 및 선호 사업 의견 청취	2회이상 개최시 추가 작성
	'24. 9. 28	○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	
② 지역위원회 운영	'24. 10. 6	○ 지역위원회 심의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위원12명) - 심의결과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위원회 운영시 작성
	'24. 10. 8	○ 지역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4.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③ 확정 사업계획(안) 공개	'25. 1. 1	○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5. 1. 1 ~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일정 등	
기타사항	'24. 10. 15	○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 -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	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2. 서식 4-2 <단위사업계획서>

○ 작성요령

- ① 세부사업 :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中 선택
- ② 사업종류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업유치지원, 그밖의지원 中 선택
- ③ 사업명 : 사업명은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사업내용을 담아야 함

【 잘못된 작성 예시 】

- ○○발전소 기본(특별)지원사업(x), 소규모 주민숙원사업(x), 주거개선사업(x)
- ○○본부 장학금 지원(x) → 중고등학생(수혜대상 명시) 장학금 지원사업(○)
- 방과후교실(x) → ○○초등학교(대상 학교 명시) 방과후수업 지원 (○)
- 전기요금보조사업(x) → ○○지역 주택용(산업용)(용도 명시) 전기요금보조사업(○)
- 태양광시설(x) → ○○마을 ○○kW(시설용량 명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 ○○리 부지매입(x) → 마을회관 신축(목적 명시) ○○ 부지매입(○)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x) → ○○마을 ○○(사업내용) 환경개선(○)

- ④ 사업기간 : 사업 종료일을 2026년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예) '25.3월~'25.12월 (○) / '25.3월~'26.4월 (X)

⑤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 : 지자체명 또는 발전사업
- 사업추진방식 : 시행자직접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중 ○ 표시
- ※ 간접보조사업자 선택 시 간접보조사업자명, 간접보조 시행근거,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사후관리방안 작성

○ 간접보조 시행근거 : 규칙*, 자체조례 등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 심의&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 간접보조 시행근거로, "발주변 시행요령 제18조의2" 그 자체를 작성시 : 인정 불가

○ 간접보조 시행사유

- 위 시행근거 있는 경우 : 해당 조항, 조문 작성
- 위 시행근거 없는 경우 : 간접보조가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발주법 시행요령 제18조2, 수립지침3장2 】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부 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위임 가능
- **민간단체 등에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 기준**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함이 원칙이나 시행요령 제18조2에 따라 **아래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임 가능**
 - 지원사업의 내용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포함시 : **국가 및 지방계약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 추정가격 8천만원
 -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건축의 경우, **부기등기 이행**
- 재위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위임 시행근거(규칙 등)가 없는 경우 **재위임이 불가피한 사유** 소명

⑥ 사업효과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예상 기대수익 작성**

⑦ 연간 사업계획 : 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 2개 이상의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총 사업비, 지원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내역'을 참고사항으로 추가 작성

(예) AA태양광 기본지원금 일부와, BB화력 기본지원금을 해당 사업에 투입시, AA태양광발전소분 단위사업계획서 작성예시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총 사업비		10,000	50,000		60,000
지원사업비*		10,000			10,000

(참고)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내역

발전소 구분	사업비 구분	총 지원금(천원)	당해 사업 투입액(천원)	비고
AA태양광	기본	15,000	10,000	
BB화력	기본	50,000	50,000	
당해 사업비 합계			60,000	

⑧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공사 1식 등 지양)

○ 작성예시

단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

(2) 사업명 : ○○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지역특산물인 ○○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딸기 재배 관련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기술 선진화

☐ 사업필요성

-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작업시설 현대화 및 작업 능률 향상필요
-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증진 통한 주민 소득증대 기여

(4)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시		○	○○영농회	□□시 규칙 제○조에 의거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예시”) ○ ○○영농회는 마을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접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 ○○영농회는 다년간의 농업작목반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딸기작목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예시”) ○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 사업비 지급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7) 사업장소 : ○○시 ○○동 ○○번지 딸기 재배단지

(8) 사업효과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기대수익(예상수익금) 작성

☐ 기대효과

- 공동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 작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선진농업기법 습득 및 노령 주민의 투입 노동력 감소

(9)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총 사업비	305,000	65,000	-	300,000	700,000
지원사업비	305,000	65,000	-	300,000	700,0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2025년 지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 부지구입	■ 300(평) × 1,000천원(평,3.3㎡당) = 300,000천원	300,000	
■ 설계용역	■ 건축설계용역비 30,000천원	30,000	
■ 건설비	■ 기초토목공사 : 150,000천원 ■ 내부시설물공사 : 110,000천원 ■ 기타부대공사 : 50,000천원 ■ 공사관리비 : 13,000천원 ■ 감리비 : 7,000천원	330,000	
■ 기타경비	■ 인·허가 취득비 : 35,000천원 ■ 부지 감정평가비 : 5,000천원	40,000	
합 계		700,000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12)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참고자료 : 자체 사업계획서 별첨

7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www.eted.or.kr)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심의
※ 공문만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입력시 심의 제외됨
2. 해당 발전소별로, 아래의 순서로 ①~⑦까지 하나의 한글 HWP파일로 만들어 제출 (한 페이지에 1쪽씩, 쪽번호 없이), ⑧은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구분		제출서류 내역
①	필수	[서식4]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 필요
②	필수	[서식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③	필수	[서식4-2] 단위사업계획서
④	필수	각종 증빙서류 - 견적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주민의견수렴 회의록 등 주민의견수렴 관련 증빙, 지역위원회 관련 증빙(해당시) 등
⑤	해당시	[서식4-3] 시설 운영계획서 ※직인 날인 필요
⑥	해당시	[서식5]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⑦	필수	[서식6]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⑧	해당시	원전지자체 주변지역 지원비율 서식

※ 단위사업계획이 여러 개인 경우,

- 각각의 단위사업계획서(③) 말미마다, 그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증빙서류(④)와 시설 운영계획서(⑤)를 삽입

단, 여러개의 단위사업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한 경우 : 주민의견수렴 관련 증빙을 각 단위사업계획서마다 중복해서 삽입하지 말고, ②서식4-1 뒤에 한번만 삽입

※ 지역위 의무대상인 경우, 지역위원회 회의록도 ②서식4-1 뒤에 한번만 삽입

3. 자료 제출 형태 : 25년 86차_시행자명_발전소명_사업계획서.hwp

○ 예) 25년 86차_○○시(○○군, ○○시 ○○구)_○○발전소_사업계획서.hwp

4. 불필요한 증빙 제출 지양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제출 요망

(예) 공사비 산출내역서 원본(수십개의 탭으로 구성된 엑셀파일) 그대로 제출 (X)
산출내역서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확인가능한 총괄표 발췌하여 제출 (O)

1. **(사업계획 제출 1회)** 사업계획서 제출은 발주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1회(10월말)로 하고, 심의횟수도 1회(12월)로 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재심의(익년 3월경)
2. **(소득증대사업 의무비율 준수)** 소득증대사업 의무비율 적용 시행자*는 해당 의무비율(30% 이상) 준수
 - * 기본·특별지원금 합산 5억원 이상 지자체
3. **(간접보조사업 관리 강화)** 사업계획 수립 시 간접보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사후관리방안 마련 및 간접보조사업자 관리 철저
4. **(중요재산 관리 철저)**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행위 금지
 - ※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5. **(관련 법령 준수)** 지원사업 추진 시 발주법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절차를 준수하고, 산업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금지
6. **(사업비 계좌 분리 운영)** 타기금 및 타 지원금과 별도 분리·운영해야 하며, 발전소별 및 사업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사업운영비)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운영해야 함
 - ※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지원금의 관리 등)

참고1

2025년 사업계획수립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YES	NO
1	2025년 예산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YES ☐	NO ☐
2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셨습니까?	YES ☐	NO ☐
3	(지역위원회 의무대상*인 경우)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까?	YES ☐	NO ☐
4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까?	YES ☐	NO ☐
5	확정사업공개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셨습니까?	YES ☐	NO ☐
6	사업종류와 세부조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셨습니까?	YES ☐	NO ☐
7	(간접보조사업 시행 시) - 재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시행근거, 시행사유, 사후관리방안을 적정하게 작성하셨습니까?	YES ☐	NO ☐
8	지원사업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습니까?	YES ☐	NO ☐
9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준비했습니까?	YES ☐	NO ☐
10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 및 부적합 사업유형 등을 확인하셨습니까?	YES ☐	NO ☐
11	사업계획서 및 증빙 등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셨습니까?	YES ☐	NO ☐

*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전소

참고2 대표 부적합 사업유형

1. (개별지원)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세대별 지원은 법령 및 시행요령 등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 불인정

- (개별지원 예외인정) 장학금 지급(시행요령 제12조), 전기요금보조(시행요령 제14조),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시행요령 제15조,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개별지원 관련 부적합 사업사례 >

사업명	부적합 사유
공공사회사회복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 임금	특정 개인 지원
보훈유공자 대상 긴급사회복지 차량지원	특정 개인 지원
주민 대상 농자재 교환권 구입	특정 개인 지원
공공시설 및 공원관리 인부임 지급	특정 개인 지원
재해 피해가구 구호물품 지원	특정 가구 지원, 지자체 예산
개별 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특정 가구 지원, 개인 소유
희망 바구니사업 (위기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특정 가구 지원
새터민 대안학교 운영지원사업	특정 계층 지원
북한 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교재비 지원	특정 계층 지원
소외·취약계층 LED 교체공사, 김장행사, 반찬나누기	특정 계층 지원
○○아파트 CCTV설치, 엘리베이터교체, 옥상방수 공사	특정 가구만을 위한 시설 지원
○○아파트 경비실 증개축	특정 가구만을 위한 시설 지원
○○아파트 내 북카페 의자·테이블 구입	특정 가구만을 위한 시설 지원
○○아파트 에너지사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특정 가구만을 위한 시설 지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특정 가구만을 위한 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이용시설 기능보강	특정 단체 지원
○○에코센터 운영 지원	특정 단체 지원
문화전승행사 운영경비 지원	특정 단체 지원
발전소 사업을 위한 사무운영 경비	특정 단체 지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및 휴게공간 조성	특정 계층 지원
봉사활동 단체 지원	특정 단체 지원
교통약자 수송 약자 운영경비 지원	특정 계층 지원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	특정 개인 지원
저소득층 주택용 소화기 지원사업	특정 가구 지원
취약계층 가스안전 차단기(가스콕) 지원	특정 계층 지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특정 계층 지원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	특정 단체 지원

2. (선심성·행사성 사업) 문중회, 번영회, 마을회 등 지역특정 단체의 각종 행사 관련 운영비, 소규모 체육행사 등 일회성 지원, 관광 지원 등 선심성 사업 불가

사업명	부적합 사유
○○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참여자 선진사례 견학	선심성 사업
주민역량을 키우는 마을복지리더 양성	선심성 사업
○○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행사성 사업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행사성 사업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	일회성, 선심성 사업
○○리 종량제 봉투 구입	일회성, 선심성 사업

3.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사무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며, 행정복지센터는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

사업명	부적합 사유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	지자체 예산 집행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 강화 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집기 비품 구입	지자체 예산 집행
○○시 관내 주차선 재도색	지자체 예산 집행
○○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지자체 예산 집행
○○시 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시 청사 전자 안내판 설치	지자체 예산 집행
○○관내 차선도색 정비공사, 도로 블록 교체	지자체 예산 집행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신호기 설치와 정비	지자체 예산 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육교 환경 개선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각종 재해 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지자체 예산 집행
하수구 맨홀 교체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지자체 예산 집행

4.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물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불가,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시설물을 시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시행요령 제11조 제1항)
5. (부동산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단순 임대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6. (시행자별 불가능 사업종류)
- 지자체 : 육영사업 불가
 - 단, 원전 지자체(고창, 기장, 경주, 울주, 울진, 영광) 가능
 - 발전사 :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지원 불가
 - 단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협의 공문 제출 시 가능
7. (기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규, 요령, 지침에 벗어난 사업계획으로, 발주변 지원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사업

참고3 2025년 사업계획 추진 일정

추진단계	주요 업무	시기	관련법령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내실화 추진(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확정	○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기재부)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안내(전담기관→사업시행자) -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내역, 배분계획 및 작성방법 등 ○ 기금운용계획 작성자료 제출(사업시행자→전담기관) - 발전소별 지원금 및 배분내역, 특별지원금 연차별 사업계획 등 ○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산업부→기재부)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정부안 확정(기재부) ○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본회의 심의·확정(국회)	~3.31 3월 3~4월 ~5.31 ~8.31 ~12.2	국가재정법 제66조
사업계획 수립지침 확정 통보	○ 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주변지역심의위 심의후, 산업부/전담기관→사업시행자)	8월	발주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업계획 수립·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사업시행자→전담기관) -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위원회 심의 - 지역현안사업 등 반영 ○ 사업계획 검토 및 제출(전담기관→산업부)	10~12월	"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통보	○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의결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확정사업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전담기관→사업시행자)	12월	"
■사업관리	▶ 사업 진도점검/모니터링 강화(당해연도)		
지원금신청/교부	○ 매분기 개시 전 시행자별 자금신청 ○ 분기 개시 후 10일 이내 교부(계획적/탄력적 교부)	매분기	발주법시행령 제26조 시행요령 제9조
집행실적 관리 및 진도점검	○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행결과 제출(시행자→전담기관) ○ 분기별 진도점검 보고(전담기관→산업부) ○ 중간점검 시행(서류 및 현장점검)	매분기 수시	발주법시행령 제31조 보조금법 제25조
■사업결산	▶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차년도)		
사업결과 제출 및 결산	○ 결산시행 안내(전담기관→ 회계법인, 사업시행자) ○ 결산서류 제출(사업시행자→회계법인, 전담기관) ○ 결산서류 확인, 검토(회계법인 위탁정산) ○ 결산보고서 제출(회계법인→전담기관) ○ 결산(안) 심의·의결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익년)1월 2월~4월 5월 이후	발주법 제18조
사업결과 평가	○ 사업결과 평가지침 통보(전담기관→ 시행자) ○ 사업결과 시행실적서 제출(사업시행자→전담기관) ○ 평가(안) 심의·의결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결산 후	발주법 제16조의5 및 평가지침